

투자 위험 등급 5등급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주)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등을 감안하여 5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회사3호\(채권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회사3호\(채권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자투자회사3호\(채권혼합\)](#)
2. 집합투자업자의 명칭 : 우리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26.06.30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07.16**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회사 주권 (1조주)
7. 모집(매출) 기간: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우리자산운용 본점

(☎02-2118-0500 www.wooriam.kr)

각 판매회사 본·지점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요약정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 고 : 펀드용어 정리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회사와 관련된 그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여 소규모 합병, 모펀드 이전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기준일: 2026.06.30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펀드코드 : 56357]					
투자위험등급					
5등급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우리자산운용(는 이 투자회사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등을 감안하여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대부분을 주식 및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 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가격 하락 위험, 이자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회사가 주로 투자하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는 한국거래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기업공개 또는 신규상장공모를 위한 것과 주권상장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것에 투자하여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 등을 추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을 국내채권에 투자하여 채권의 이자수익 및 매매차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회사, 증권(채권혼합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없음	0.7420	0.4900	1.1500	1.4079	143	292	446	770	1,687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구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2025.07.01~ 2026.06.30	최근 2년 2024.07.01~ 2026.06.30	최근 3년 2023.07.01~ 2026.06.30	최근 5년 2021.07.01~ 2026.06.30	설정일 이후			
	펀드	06.04.21	0.71	1.69	2.38	2.39	3.52			
	비교지수(%)	-	5.37	4.75	4.69	3.39	3.31			
	수익률 변동성 (%)	06.04.21	1.79	1.36	1.31	1.45	1.45			
	주1) 비교지수 : 3%*KOSPI+90%*매경BP1년+7%*CALL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 후 해당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구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 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상하	1986	책임 (팀장)	23	5,189	17.73	10.83	26.39	15.16	4 년 3 개월						
서보민	1984	책임 (본부장)	66	52,117	-	-			12 년 1 개월						
우준식	1974	부책임 (본부장)	2	79	-	-			11 년 2 개월						
김중혁	1996	부책임 (사원)	41	5,622	-	-			1 개월						
주1) 이 투자회사는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ESG운용본부와 채권운용1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 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table><tr><th>구분</th><th>투자위험의 주요내용</th></tr><tr><td>금리변동 위험</td><td>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tr><td>주식가격 변동위험</td><td>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td></tr></tabl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4영업일(D+3)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5영업일(D+4)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90일 미만 환매 시 이익금의 70%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wooriam.kr)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우리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211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wooriam.kr)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 매출 총액	1조 주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16일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금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41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금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wooriam.kr)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자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5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가.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
-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 (채권혼합형)
-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중도환매가능)
-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계속 모집이 가능)
- 마. 특수형태 표시: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회사)
-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X (해당사항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의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조주**

- (주 1)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예정금액까지 추가모집이 가능합니다.
-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 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모집장소	모집(판매)은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판매회사 명단은 협회(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2 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 10 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5635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 경 사 항
2006년 03월 27일	투자회사 최초설립
2006년 04월 13일	최초등록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1110)
2006년 04월 21일	변경등록 (판매회사 추가)
2006년 09월 19일	변경등록 (환매수수료 적용기간 단축 외)
2006년 10월 04일	변경등록 (판매회사 추가)
2007년 08월 28일	변경등록 (정관변경 - 주식투자대상 확대)
2008년 02월 29일	변경등록 (정관변경 - 채권 및 어음등급 상향 조정)
2009년 05월 11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투자회사 명칭변경
2009년 09월 30일	투자대상변경에 따른 정관변경
2010년 07월 21일	운용역 변경 (이형복→이은영)
2011년 03월 29일	운용역 변경 (손경수→류진호)
2012년 05월 31일	운용역 변경 (류진호→이정호)
2012년 10월 05일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변경
2014년 01월 21일	운용전문인력 변경(이정호,이은영→류진호,최영철)
2014년 08월 04일	투자회사 사명변경(동양모아드림1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 동양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투자회사3호(채권혼합)
2015년 05월 15일	투자대상 중 집합투자증권 삭제
2016년 04월 28일	정기갱신 (매매이익 유보 사항외)
2016년 07월 02일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2016년 07월 20일	운용역 변경(최영철→우준식)
2016년 08월 16일	채권 및 어음 신용등급 “취득 시”신용등급으로 변경, 결산방법 변경
2017년 06월 23일	채권부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류진호→이정호), 정기갱신
2018년 02월 23일	모자형 펀드로 구조 변경, 운용보수 인하(연 0.26% → 연 0.23%)
2018년 06월 21일	책임운용역변경(우준식→전병기), 부책임운용역변경(우준식)
2018년 10월 04일	책임운용역 변경(전병기→우준식), 부책임운용역 변경(우준식→박지은)
2018년 11월 22일	책임운용역 변경(이정호→김준현),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역 변경(이정호→김준현)
2019년 06월 19일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반영.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기재
2019년 08월 01일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변경에 따른 사명 및 펀드명칭 변경
2019년 09월 16일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기재정정
2020년 03월 17일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20년 5월 28일	판매회사 보수 인하, 환매수수료 기간 단축, 투자중개업자선정기준 변경,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업데이트
2021년 2월 19일	책임운용역변경(김준현→황우성),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역 변경(김준현→황우성)
2021년 5월 25일	정기갱신
2021년 10월 21일	부책임운용역변경(박지은→이호석), 모투자신탁 부책임운용역 변경(박지은→이호석)
2022년 02월 15일	모투자신탁 추가(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모투자신탁 추가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사무관리회사 보수 인하
2022년 02월 25일	모투자신탁 삭제(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
2022년 3월 11일	책임운용역(우준식→박상하) 및 부책임운용역(이호석→우준식) 변경,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역(우준식→박상하) 및 부책임운용역(이호석→우준식) 변경
2022년 5월 20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3년 05월 16일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24년 05월 10일	수익률변동성 기준 변경(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5년 04월 29일	외국원천징수세액 환급내용 삭제
2025년 12월 24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년 02월 12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년 05월 14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2026년 07월 16일	운용전문인력 변경,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이지자산평가 추가)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이 투자회사는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회사로 별도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투자회사의 종료일을 의미하며, 투자자의 저축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법령 또는 정관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 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 될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1 37 층, 44 층 (대표전화 : 02-2118-05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작성기준일 현재)

(1)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상하	1986	팀장	23	5,189	17.73	10.83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4 년 3 개월			2010.12 ~ 2013.09 한양증권 리서치 2013.09 ~ 2017.03 DB 금융투자 리서치 2017.08 ~ 2018.08 씨앗자산운용 리서치 2018.09 ~ 2021.03 IBK 자산운용 리서치 2021.03 ~ 2021.12 BNK 자산운용 리서치 2021.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리서치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서보민	1984	본부장	66	52,117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2년 1개월			2010.05 ~ 2011.08 한국자산평가 외화채권평가 2011.09 ~ 2020.06 신한 BNPP 파riba자산운용 채권운용 2020.06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 주1) 이 투자회사는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ESG운용본부와 채권운용1본부가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회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우준식	1974	본부장	2	79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1년 2개월			2009.06 ~ 현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김중혁	1996	사원	41	5,622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개월			2023.01 ~ 2024.06 (주)효성 재무분석 2024.07 ~ 2025.10 한강에셋자산운용 리서치/트레이더 2025.10 ~ 현재 우리자산운용 리서치/트레이더					

- 주1) 이 투자회사는 본부 또는 팀운용 방식으로 ESG운용본부와 채권운용1본부가 담당하며, ‘부책임용운 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회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부책임용운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해당사항 없음
-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운용기간이 1년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3)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박상하, 황우성	2022.03 ~ 2026.02
박상하, 유정규	2026.02 ~ 2026.05
박상하, 서보민	2026.05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우준식	2022.03 ~ 2025.12
김준형	2025.12 ~ 2026.02
황우성, 김준형	2026.02 ~ 2026.05
김준형, 김중혁	2026.05 ~ 2026.07
우준식, 김중혁	2026.07 ~ 현재

- 주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박상하	1986	팀장	23	5,189	17.73	10.83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4 년 3 개월			2010.12 ~ 2013.09 한양증권 리서치 2013.09 ~ 2017.03 DB 금융투자 리서치 2017.08 ~ 2018.08 씨앗자산운용 리서치 2018.09 ~ 2021.03 IBK 자산운용 리서치 2021.03 ~ 2021.12 BNK 자산운용 리서치 2021.12 ~ 현 재 우리자산운용 리서치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서보민	1984	본부장	66	52,117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2년 1개월			2010.05 ~ 2011.08 한국자산평가 외화채권평가 2011.09 ~ 2020.06 신한 BNPP 파리바자산운용 채권운용 2020.06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우준식	1974	본부장	2	79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1 년 2 개월			2009.06 ~ 현 재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혼합채권형)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수(개)	운용규모 (억원)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김중혁	1996	사원	41	5,622	-	-	26.39	15.16
운용경력년수			주요 이력					

1 개월	2023.01 ~ 2024.06 (주)효성 재무분석
	2024.07 ~ 2025.10 한강에셋자산운용 리서치/트레이더
	2025.10 ~ 현 재 우리자산운용 리서치/트레이더

※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내역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박상하, 황우성	2022.03 ~ 2026.02
박상하, 유정규	2026.02 ~ 2026.05
박상하, 서보민	2026.05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우준식	2022.03 ~ 2025.12
김준형	2025.12 ~ 2026.02
황우성, 김준형	2026.02 ~ 2026.05
김준형, 김중혁	2026.05 ~ 2026.07
우준식, 김중혁	2026.07 ~ 현재

주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형) 투자회사, 추가형, 개방형, 모자형

나.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 구조로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으며,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합투자기구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 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자집합투자기구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 투자회사3호(채권혼합)	회사 자산총액의 100%이하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우리뱅크플러스 공모주10증권 모투자신탁2호 (채권혼합)	주요 투자대상	✓ 주식에 10%이하 투자 ✓ 채권에 40%이상 투자 ✓ 어음 등에 60%이하 투자 등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 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및	이 투자신탁은 채권 및 공모주 주식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대 상 채권 및 주식의 성과와 유사한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철저한 신용분석

	위험관리	및 유동성관리등으로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	------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회사는 모자형 구조의 자투자회사로써 주로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회사입니다.

그러나, 당해 회사는 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권리를 포함합니다.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100% 이하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②	단기대출 및 금융 기관에의 예치	10% 이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주주의 환매청구에 대응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할 수 있습니다.
③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3 호 및 제4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1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또는 해산일 이전 1월간
3.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부분환매가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4. 회사자산인 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

■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내용
① 주식	10%이하(다만, 주식 및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

		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내)	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과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예탁증서
②	채권	40%이상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 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등	6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취득 시 신용등급이 A2- 이상 인 것
⑤	채권관련 집합투자 증권등	40%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⑥	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이나 주식 · 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⑦	증권의 대여 ¹⁾	증권총액의 5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것
⑧	증권의 차입 ²⁾	자산총액의 20%이하	법시행령 제81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것
⑨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일정기간후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⑩	신탁업자고유재산과의 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⑪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⑫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⑬	환매조건부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 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 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1)집합투자업자는 투자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우리 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투자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환매조건부매수	
② 동일종목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 자산총액의 100%까지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가목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 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④	파생상품매 매	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장내파생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⑤	집합투자증권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투자신탁 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 로부터 1개월간
⑥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⑦	후순위채투 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행위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⑤~⑨, 투자제한 ②~⑤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회사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투자회사 재산의 100%이하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투자회사에서는 특별한 위험관리 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모투자신탁에서 위험관리전략을 구사하므로 아래 모투자신탁 위험관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가. 채권투자전략 1) 가중평균잔존만기(듀레이션) 금리 하락기에 가중평균잔존만기를 확대하고 금리 상승기에 축소하여 자본이득 최대화 및 자본 손실 최소화를 추구하는 전략 ※ 가중평균잔존만기란?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들 각기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가치화한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눈 것. 이는 채권에 투자된 원금의 평균회수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수익률곡선 전략 상대적으로 가장 가파른 수익률곡선 구간으로 지속적인 자산배분 비율조정 시행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권보유 수익 극대화 3) 업종별 배분 전략 경제 지표 및 수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업종별 배분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거나 덜 오를만한 업종에 투자 비중을 늘림 <위험관리전략> i) 신용위험관리 철저한 신용분석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신용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의 매출액 및 현금흐름, 부채비율, 이자 보상배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밖의 시장정보나 그룹의 재무지원 가능성, M&A Issue 등을 고려하여 투자가능 기업군(투자 Universe)를 사전적으로 작성한 후 내부 리스크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선별된 기업에만 투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i) 이자율 위험관리

	자산운용회사는 보유자산의 가격변동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선물거래 및 스왑거래를 활용하여 헤지거래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때 자산가격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한 포지션을 시장에서 취하여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투기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예측한 방향과 동일한 방향의 자산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반대 방향의 자산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손실의 위험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iii) 유동성 위험관리 우량 채권위주의 자산구성으로 수익성 및 안전성과 함께 시장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펀드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구성하여 운용합니다. 나. 주식투자전략 1)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하여 공모주식에 주로 투자 2) 투자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주식의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 후 대량 거래 및 상승 둔화 시 매도하여 주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 3) 실적이나 장세전망에 따른 단순한 장기보유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서 시장의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우량주를 선별하여 기간확약을 통한 물량의 확보로 수익의 극대화 및 차별화를 추구 <위험관리전략> 시장 리스크 발생시 대내외 환경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에 대응 <pre> graph TD A[시장리스크 대두시] --> B[시장리스크의 정의와 수준 측정] C[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 B D[외부 증권사 및 리서치 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 B B --> E[대응 전략 1) 주식 편입비 조절 2) 관련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큰 종목 위주로 축소 3) 방어주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 </pre> ■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위기 모니터링 지표를 통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식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기대응체계를 수립. 회사의 AUM 하락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별도 위기관리기준을 통하여 펀드의 유동성위기(대량환매)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기준 초과시 단계별 대응방안에 따라 대응.
--	--

다. 비교지수

3%*KOSPI + 90%*매경BP1년 + 7%*CALL

이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비교를 위해 상기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KOSPI(한국종합주가지수): 1980년 1월 4일의 시가총액을 분모로 하고, 산출시점의 시가총액을 분자로 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일정시점 대비 현재의 주가수준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즉, 1980년 1월 4일 기준 상장종목 전체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보고 현재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수준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 매경BP1년 지수: 한국자산평가가 발표하는 신용등급 A-이상의 국내채권(6,600종목 내외)으로 듀레이션이 1년이 되도록 종합채권지수를 재구성한 총수익지수(Total Return Index)입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회사는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에 100%이하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과 채권 및 어음 등의 투자수익률과 모투자신탁 투자비율에 따라 연동되는 수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신탁재산을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이 투자회사는 국내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신탁재산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당해 투자회사는 주식, 채권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회사는 다양한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유가증권, 부동산PF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하는 유동화증권(ABCP, ABSTB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기초자산 발행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및 신용보강 기관의 의무불이행 등)이 발생할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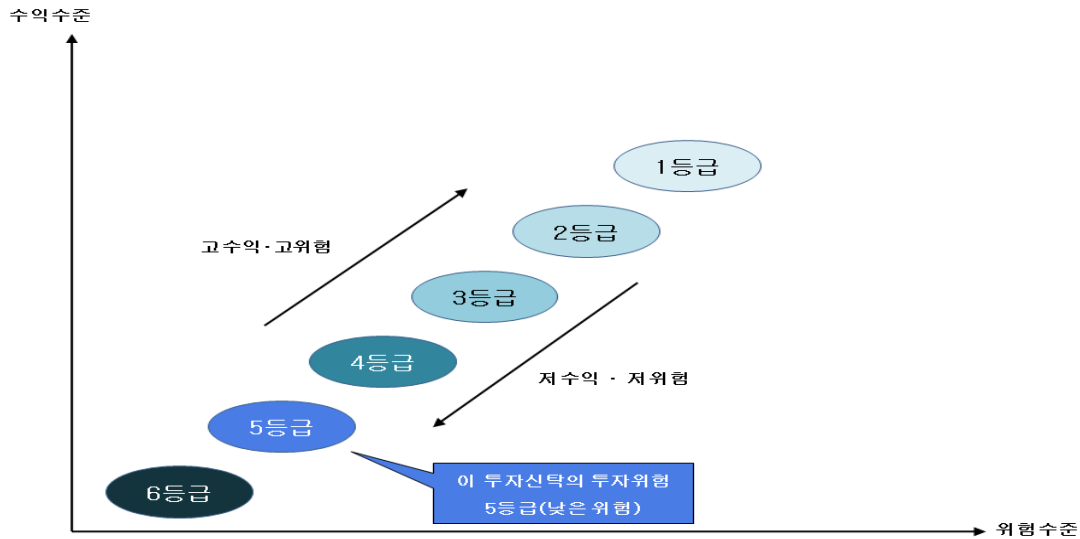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위험	회사와 같은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는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회사를 포함한 어떤 관련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회사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회사 재산의 매각이 불가능 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권의 환매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 해산위험	투자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주주총회의 결의/합병/파산/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금융감독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 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회사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로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기준으로 위험등급이 결정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 변동성은 1.63%로 6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에 해당되는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준의 변동성에 대한 인지

가 가능하고, 이에 따른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 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에서 분류한 등급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시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자산운용 자체 위험분류 기준>

■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

구 분	수 준	개 요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①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①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②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으로 구조화된 상품(전략)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단,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A-이상이거나, 그에 상응할 경우 한정) ③ 차익거래 전용 집합투자기구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①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②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③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1.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을 말하며, 추후 설정기간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투자위험 등급을 재산정할 예정이며,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

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3.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4.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을 말합니다.

5.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한해지 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Fund of Funds)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주로 편입하고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판단합니다.

7. 부동산, 특별자산 및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 운용방법 및 편입자산의 성향에 따라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 등급	2 등급	3 등급	4 등급	5 등급	6 등급
수준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 초과	50% 이하	30%이하	20%이하	10% 이하	1%이하

1. “수익률 변동성 기준”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위험등급은 매 결산 때마다 재산정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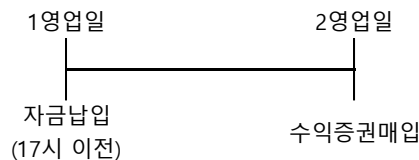
가. 매입

(1) 매입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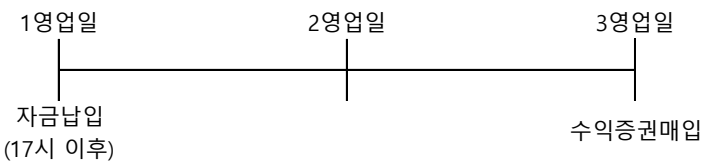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회사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 17시[오후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에 공고되는 주식의 기준가격 적용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나. 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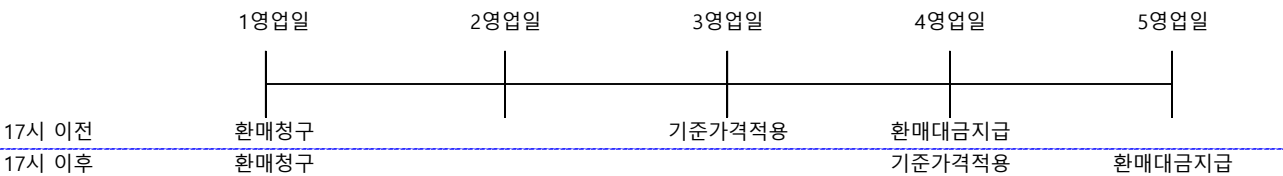
구 분		수수료(비용)	
		발생	미발생
중도환매	허용	○	
	불가		

(1) 투자회사의 환매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1) 17시[오후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2) 17시[오후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주주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 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주식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회사는 장기투자목적으로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회사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부담비율 (연간,%)	비고 (부담시기)
-----	-------------	-----------

환매수수료 (보유기간 이익금 기준 정수에 따라)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	----------	-----

(4) 매입 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정정)

이 투자회사 주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일부환매

투자자는 보유한 주권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환매연기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 1) 투자회사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2)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주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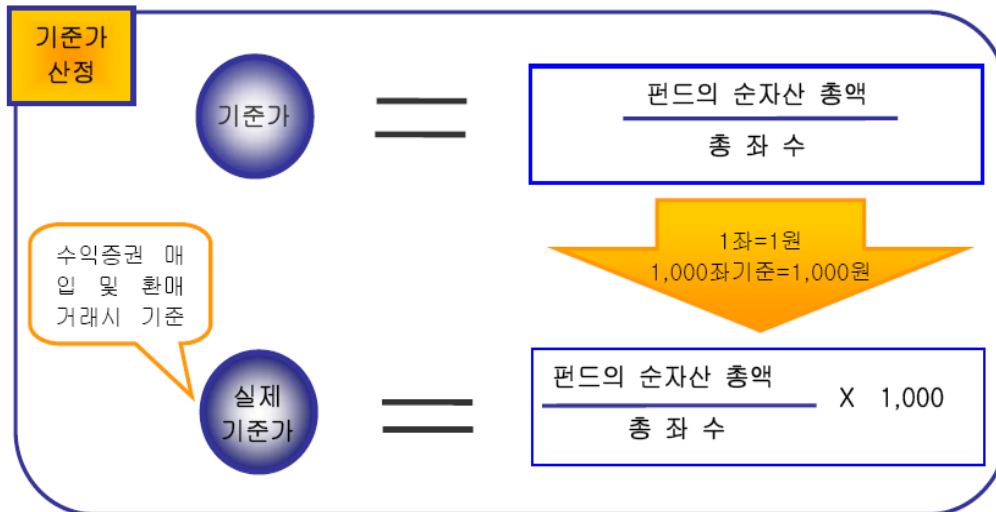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주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회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투자회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등	취득가. 다만 취득가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평가할 수 있음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상장채권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 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증권시장의 <u>전날의</u>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그집합투자증권이 거 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화표시 집합투자 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다만, 외국증권시장 에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u>전 날의</u>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u>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u>)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
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
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
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
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회사는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로부터 해당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
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 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선취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전환수수료	없음	전환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부과비율 (연간, %)	부과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연 0.2100%	최초설립일로부터 매3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연 0.4900%	
신탁업자보수	연 0.03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연 0.0120%	
총보수	연 0.7420%	-
기타 비용	연 0.6624%	사유 발생시
총보수·비용	연 1.4044%	-
(동종유형 총보수)	연 1.1500%	
합성 총보수·비용(모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연 1.4079%	
증권 거래비용	연 0.0365%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회사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주사용료 등

(주 2)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파생상품 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0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설정전인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추정할 수 없어 기재하지 않았으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이 설정된 후에는 발생한 비용을 기재합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5.03.27 ~ 2026.03.26]

(주 4) 총보수·비용 비율(TER: Total Expense Ratio)은 이 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회사(자투자회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회사(자투자회사)가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3	291	445	768	1,6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총보수 비용포함)	143	292	446	770	1,687
------------------------------------	-----	-----	-----	-----	-------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배분

주주는 투자회사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는 주주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합니다. **다만,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상환금 등의 지급

또한 투자회사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회사의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회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회사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회사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

주주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회사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투자회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이 주주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투자회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주주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주주는 투자회사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회사주식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

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주주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회사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회사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주주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주주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주는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표기준가격 :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인터넷 홈페이지등 에서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직 명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경력	소유 주식수	비고
감독이사	진 영 효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주)캠퍼스21 회장 교원캠퍼스 감사	해당 없음	
	박 시 영	*****-*****	단국대 회계학과 졸업 박찬숙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다현 청담지점 대표	해당 없음	

다. 이사의 보수지급기준

(1) 회사의 발기인총회에서 정한 설립 후 최초의 법인이사, 감독이사에 대한 보수는 다음과 같으며,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법인이사: 지급하지 아니함
- 감독이사: 월 15만원

(2) 청산인의 보수: 각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금융위원회가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회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20기 (2025.03.27 ~ 2026.03.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9기 (2024.03.27 ~ 2025.03.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18기 (2023.03.27 ~ 2024.03.26)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6.03.26)	(2025.03.26)	(2024.03.26)
운용자산	523,806,241	901,402,901	959,345,513
증권	460,361,515	832,787,901	885,495,568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63,444,726	68,615,000	73,849,94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088	1,879	4,451
자산총계	523,808,329	901,404,780	959,349,96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3,655,726	4,364,422	4,719,715
부채총계	3,655,726	4,364,422	4,719,715
원본	511,153,105	872,164,108	928,785,980
수익조정금	-6,920,951	-1,851,444	-8,829
이익잉여금	15,920,449	26,727,694	25,853,098
자본총계	520,152,603	897,040,358	954,630,249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20기	제19기	제18기
	(2025.03.27 ~ 2026.03.26)	(2024.03.27 ~ 2025.03.26)	(2023.03.27 ~ 2024.03.26)
운용수익	27,161,762	38,845,593	37,957,001
이자수익	132,385	141,793	151,878
배당수익	14,970,320	21,595,530	19,148,020
매매/평가차익(손)	12,059,057	17,108,270	18,657,10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5,939,383	-7,038,849	-6,992,443
관련회사 보수	-5,939,383	-7,038,849	-6,992,443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5,301,930	-5,079,050	-5,111,460
당기순이익	15,920,449	26,727,694	25,853,098
매매회전율	22	24	33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단위 : 백만원]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3.71	0.04	0.10	27.16	0.03	0.10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1,990.57	0.00	0.00	1,550.69	0.00	0.00
부동산	0.00	0.00	0.00	0.00	0.00	0.00
장내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장외파생상품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2,034.28	0.04	0.00	1,577.85	0.03	0.00

주1)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주]

주식의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672	18.19	861	43.71	195.34	22.38	32.36

주1)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분류 적용(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

나. 재무상태표

		제20기(2026.03.26)		제19기(2025.03.26)		제18기(2024.03.26)	
과목		금액		금액		금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63,444,726		68,615,000		73,849,945
1. 현금및현금성자산		63,444,726		68,615,000		73,849,945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0		0		0	
대출채권			0		0		0
1. 콜론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460,361,515		832,787,901		885,495,568
1. 지분증권		0		0		0	
2. 채무증권		0		0		0	
3. 수익증권		460,361,515		832,787,901		885,495,568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2,088		1,879		4,451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0		0		0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2,088		1,879		4,451	
4. 미수배당금		0		0		0	
5. 기타미수입금		0		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523,808,329		901,404,780		959,349,964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3,655,726		4,364,422		4,719,71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0		0		0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0		0		0	
4. 수수료미지급금		3,655,726		4,364,422		4,719,715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3,655,726		4,364,422		4,719,715
자 본							
1. 원 본		511,153,105		872,164,108		928,785,98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6,920,951		-1,851,444		-8,829	
3. 이월잉여금		15,920,449		26,727,694		25,853,098	
(발행좌수 당기: 511,153,105 좌		이익잉여금	15,920,449		26,727,694		25,853,098
전기: 872,164,108 좌		수익조정금	0		0		0
전전기: 928,785,980 좌)							
(기준가격 당기: 1,017.61 원							
전기: 1,028.52 원							
전전기: 1,027.83 원)							
자 본 총 계			520,152,603		897,040,358		954,630,249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23,808,329		901,404,780		959,349,964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20기(2025.03.27 ~ 2026.03.26)		제19기(2024.03.27 ~ 2025.03.26)		제18기(2023.03.27 ~ 2024.03.26)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5,102,705		21,737,323		19,299,898
1. 이 자 수 익	132,385		141,793		151,878	
2. 배당금수익	14,970,320		21,595,530		19,148,020	
3. 수수료수익	0		0		0	
4. 기타투자수익	0		0		0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2,059,057		17,108,270		18,657,103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2,059,057		17,108,270		18,657,103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0		0		0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0		0		0	
4.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손	0		0		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0		0		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11,241,313		12,117,899		12,103,903
1. 운용수수료	1,680,987		1,992,156		1,979,024	
2. 판매수수료	3,922,305		4,648,364		4,617,722	
3. 수탁수수료	240,034		284,492		282,610	
4. 사무수탁수수료	96,057		113,837		113,087	
5. 지급수수료	4,663,937		4,254,818		4,218,530	
6. 기타비용	637,993		824,232		892,93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5,920,449		26,727,694		25,853,09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		0		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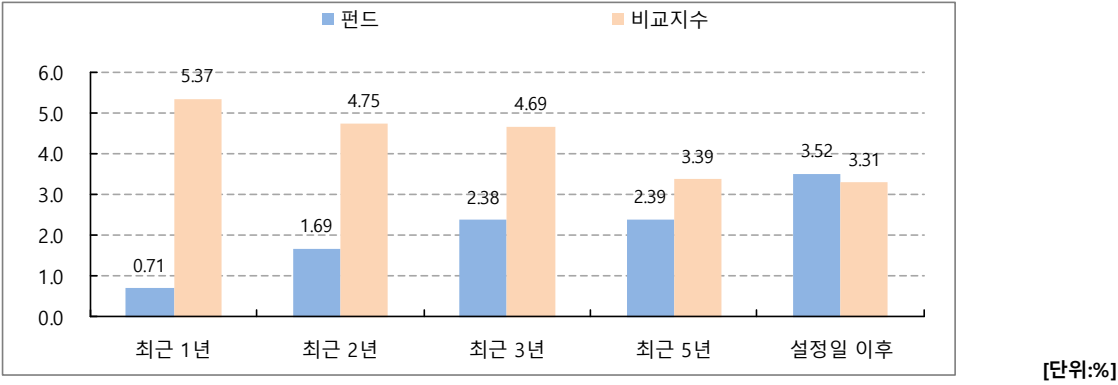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재투자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3.27 ~ 2026.03.26	8.72	8.72	0.22	0.22	3.83	3.90	5.11	5.11	0.22
2024.03.27 ~ 2025.03.26	9.29	9.29	0.23	0.23	0.80	0.82	8.72	8.72	0.23
2023.03.27 ~ 2024.03.26	9.24	9.24	0.14	0.14	0.10	0.10	9.29	9.29	0.1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회사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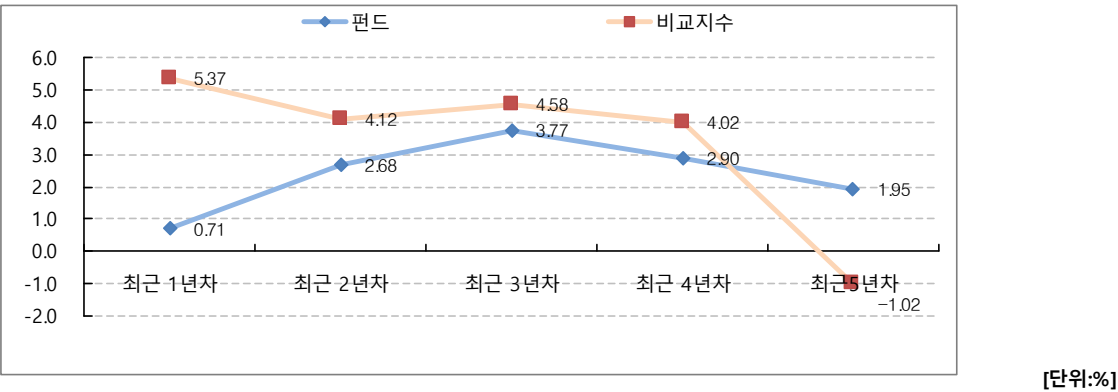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25.07.01~2026.06.30	2024.07.01~2026.06.30	2023.07.01~2026.06.30	2021.07.01~2026.06.30	2006.04.21~2026.06.30
펀드	2006.04.21	0.71	1.69	2.38	2.39	3.52
비교지수		5.37	4.75	4.69	3.39	3.31
수익률 변동성		1.79	1.36	1.31	1.45	1.45

- 주 1) 비교지수 : 3%*KOSPI+90%*매경 BP1 년+7%*CALL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이며,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 주 5)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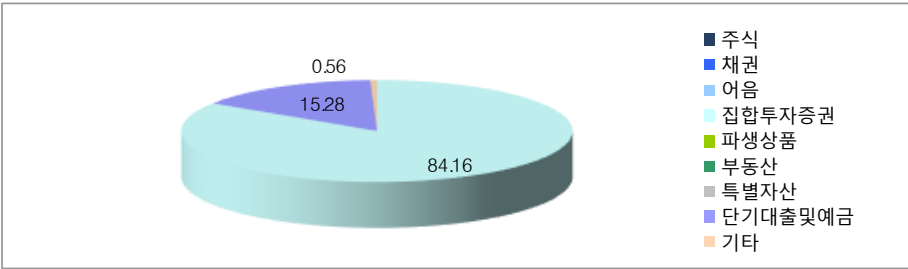
기간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25.07.01~2026.06.30	2024.07.01~2025.06.30	2023.07.01~2024.06.30	2022.07.01~2023.06.30	2021.07.01~2022.06.30
펀드	2006.04.21	0.71	2.68	3.77	2.90	1.95
비교지수		5.37	4.12	4.58	4.02	-1.02

- 주 1) 비교지수 : 3%*KOSPI+90%*매경 BP1 년+7%*CALL
-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회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3)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 수익률로,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 회사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으며,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 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 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환산 수익률’을 기재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6.06.26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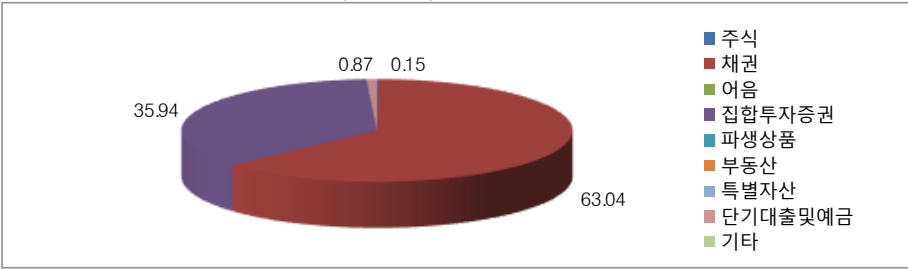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0 (0.00)	0.0 (0.00)	0.0 (0.00)	2.6 (84.16)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5 (15.28)	0.0 (0.56)	3.1 (100.00)
KRW	0.0 (0.00)	0.0 (0.00)	0.0 (0.00)	2.6 (84.16)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5 (15.28)	0.0 (0.56)	3.1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의 자산구성현황

우리뱅크플러스공모주10증권모투자신탁2호(채권혼합)



[2026.06.26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합계	0.1 (0.15)	45.0 (63.04)	0.0 (0.00)	25.6 (35.94)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6 (0.87)	0.0 (0.00)	71.3 (100.00)
KRW	0.1 (0.15)	45.0 (63.04)	0.0 (0.00)	25.6 (35.94)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6 (0.87)	0.0 (0.00)	71.3 (100.00)

주 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주 2) 어음 등 : CD 및 어음을 나타냄

1)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2)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3)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4)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음

6)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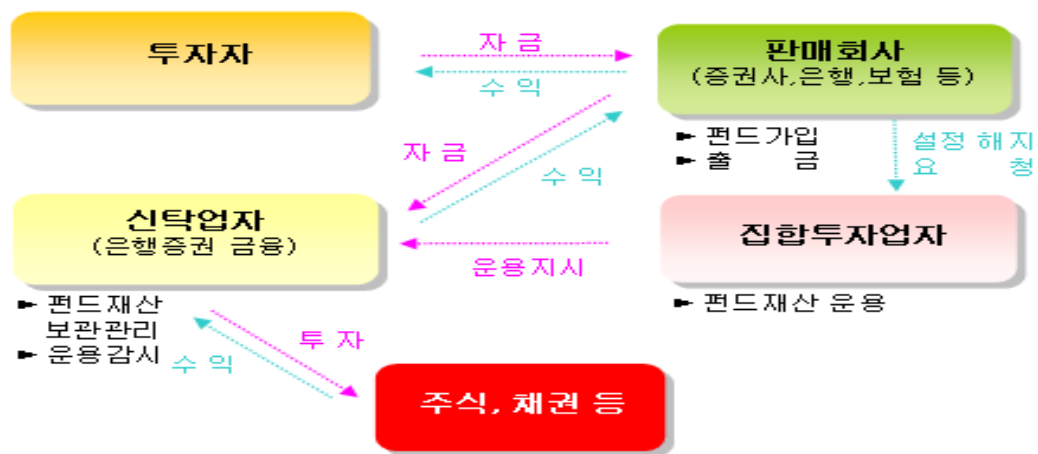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음

7)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구조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우리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1 37층, 44층 (02-2118-0500 www.wooriam.kr)
회사연혁	2000. 6. 운용사 설립허가 2000. 7. 동양오리온투신증권에서 자산운용 부문 분리 설립 2000. 8. 영업개시 2000. 9. 투자자문업·일임업 등록 2009. 1. 관리자산 8.9조원 2010. 4. 사명변경(구)동양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2019. 8. 사명변경(구)동양자산운용주식회사 2021.10.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 1. 우리자산운용과 우리글로벌자산운용 합병
자본금	23,985,770,000원
주요주주	우리금융지주 100%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 우리펀드서비스 이해관계 신탁업자(30% 이상) : 한국증권금융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1. 투자회사의 설정. 해지
- 2.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회사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요약재무상태표			요약손익계산서		
항목	25.12.31	24.12.31	항목	25.12.31	24.12.31
유동 자산	980.8	802.6	영업수익	610.2	499.2
고정 자산	1,011.1	1,016.5	영업비용	394.5	372.6
자산 총계	1,991.9	1,819.1	영업이익	215.7	126.6
유동 부채	198.2	176.6	영업외수익	34.8	36.0
고정 부채	-	-	영업외비용	5.3	4.3
부채 총계	198.2	176.6	세전순이익	245.2	158.3
자본금	239.9	239.9	법인세비용	58.3	39.7
자본잉여금	313.2	313.2			
이익잉여금	1,232.5	1,084.0			
자본조정	-	-			
기타포괄손익	8.1	5.4			
자본총계	1,793.7	1,642.5	당기순이익	186.9	118.6

라. 운용자산 규모

[2026.06.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7,306	112,364	9,711	15,088	5,360	19,391	22,461	7,076	205,217	403,97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 사 명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10 (연락처: 02-3770-8880, www.ksfc.com)
회 사 연 혁	1955.10 한국연합증권금융 1962.7 한국증권금융(주)로 개칭 1971.12 증권유통금융업무개시 2002.12 신탁업무개시 2004.05.31 금융감독원 등록

(1) 주요업무

- 1.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
-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주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8.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 9.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10. 투자회사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회사재산의 내역이 일치여부 확인

(2)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정관, 투자설명서, 투자회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정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위험관

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

(3)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 60 길 17 (연락처: 02-3151-3500)
회사연혁	2000.08. (주)리젠코리아 인수 영업개시(신탁사업본부) 2000.11. 신탁사업본부 산하 증권수탁팀으로 흡수 2004.0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이해상충행위 방지규정으로 업무지원본부 총무부로 조직개편 2007.02. 우리 CS 자산운용㈜의 업무대리인 계약 2007.12. 조직개편으로 기업영업전략부로 소속 변경 2009.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탁사업단으로 소속변경
홈페이지참조	www.woorifs.co.k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회사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

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KIS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원센티널 15층 T. 02-3215-1400	www.bond.co.kr
한국자산평가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1층 T. 02-2251-1300	www.koreaap.com
NICE피앤아이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삼보호정빌딩 9층 T. 02-398-3900	www.nicepni.com
에프앤자산평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T. 02-721-5300	www.fnpricing.com
이지자산평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 3층 T. 02-785-1410	www.egap.co.kr

(1) 주요업무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준칙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회사에게 제공합니다.
 - 1.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업무를 수행할 것
 - 2.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할 것
 - 3. 채권 등 투자증권의 가격평가 업무를 위하여 취득한 정보를 다른 업무의 수행에 이용하지 아니할 것
-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투자회사재산에 속하는 투자증권의 평가가격을 제공받는 경우 그 비용을 투자회사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회사에는 전체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둡니다.
- 투자자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회사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투자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1) 투자자총회의 소집

- 투자자총회는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투자자가 투자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이사회는 1월 이내에 투자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투자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이사회가 투자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투자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의결권 행사방법

- 투자자총회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투자자총회일 전날까지 투자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한 투자자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 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투자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투자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투자자는 투자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기투자자총회

- 투자회사는 투자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투자자총회(이하 "연기투자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투자회사는 연기투자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투자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투자자총회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투자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투자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투자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29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회사의 투자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투자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가 법 시행령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존속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회사를 해산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회사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 투자회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회사재산인 자산으로 투자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

- 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투자회사는 정관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정관·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에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에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에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포함)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정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

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산에 관한 사항

(1) 해산

투자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그 사실을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 투자자총회의 해산결의 / 투자회사의 피흡수 합병 / 투자회사의 파산 /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 투자회사의 등록 취소 /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31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1)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회사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주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87조 제8항 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2)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회사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투자회사의 사업년도 종료일
- 2) 투자회사의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회사의 해산일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 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회사의 자산·부채 및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정관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회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정관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 신탁업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주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주주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정관변경에 관한 공시

- 투자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투자회사의 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환매금지형투자회사로의 변경
 7.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투자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wooriam.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정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정관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또는 신탁업자가 주주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한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 1) 투자증권 거래

구분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거래 및 파생상품 거래	-평가항목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거래 유형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및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선정방법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로 조사분석서비스 및 매매체결업무에 대해 최소 매 분기마다 평가하며,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각 중개회사에 점수를 부여합니다. 운용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매매담당자는 이 기준에 따라 약정을 배분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 거래종목에 따라 배분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회사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등에 혼합하여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익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정관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